

제438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임시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8월11일(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4)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6)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9)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3)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0)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13)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7)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7)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6)
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2)
1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2)
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2)
1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6)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6)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0)
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0)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9)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6)
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0)
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2)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0)
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0)
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5)
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3)

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3)
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8)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1)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5)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3)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0)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3)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2)
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0)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6)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6)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7)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0)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7)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1)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8)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3)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9)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7)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5)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7)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0)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2)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8)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5)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8)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0)
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1)
5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3)
5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3)
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9)
5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8)
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7)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8)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4)
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2)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0)
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5)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6)
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4)
6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2)
6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6)
6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2)
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4)
6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1)
7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5)
7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6)
7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6)
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7)
7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1)
7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02)
7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86)
7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68)
7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57)
7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71)

상정된 안건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4) 6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6) 6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9) 6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3) 6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0) 6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13) 6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7) 6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7) 6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6) 6
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2) 10
1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2) 10
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2) 10
1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6) 10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6) 17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0) 17
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0) 17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9)	17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6)	17
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0)	17
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2)	17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0)	17
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0)	17
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5)	17
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3)	17
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3)	17
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8)	18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1)	18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5)	18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3)	18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0)	18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3)	18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2)	18
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0)	18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6)	18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6)	18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7)	18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0)	18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7)	18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1)	18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8)	18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3)	18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9)	18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7)	18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5)	18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7)	18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0)	18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2)	18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8)	18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5)	18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8)	18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0)	18
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1)	18
5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3)	18
5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3)	18

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9)	18
5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8)	18
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7)	18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8)	18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4)	18
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2)	18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0)	18
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5)	18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6)	18
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4)	18
6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2)	19
6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6)	19
6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2)	19
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4)	19
6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1)	19
7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5)	19
7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6)	19
7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6)	19
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7)	19
7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1)	19
7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02)	19
7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86)	19
7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68)	19
7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57)	19
7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71)	19

(10시14분 개의)

○소위원장 윤준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원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2대 후반기 들어 처음 개최되는 소위원회 회의입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에는 지난 전반기 때 심사가 일부 된 법률안과 오늘 처음 상정되는 법률안이 있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4)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6)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9)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3)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0)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13)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7)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7)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6)

(10시15분)

○소위원장 윤준병 먼저 의사일정 1항부터 제9항까지 9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설명하시기 전에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반기 때 법안소위에서 이미 축조심사까지 완료된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돼서, 문금주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전반기에 소위 위원이었습니다만 또 세 분의 소위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반기에 이루어졌던 내용들, 개정된 내용들 주요사항들을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유감스러운 내용은 국회법에 따라서 월 2회씩 농림법안심소위를 하도록 우리가 협의를 했고 또 그중에 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을 심사일정 기일로 정해서 이미 진행해 왔는데 후반기 들어서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의사일정 자체를 협의하자고, 변경하자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일하는 국회 또 효능감이 있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적인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동의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요. 대신에 오늘 함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잘 지켜질 수 있고 특히 외부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보다는 법안소위에 참여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의회주의에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런 방향으로 소위원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심사경과를 보시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기에 두 차례 소위 심사와 소위원회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논의가 정리된 내용으로 5페이지를 보시면 그간의 심사경과를 정리한 수정의견과 그리고 또 정부가 그 내용을 반영한 정부 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개정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선과 임직원 책임 강화,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 감사의 독립성 및 정부 감독 강화인데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사 및 감사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는 한편 조합원의 제명 사유에 선거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논의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임직원의 책임 강화에 대해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이사의 충실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이사의 부당한 자회사 경영 개입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 회장의 겸직을 제한하는 한편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고 유죄판결 임직원의 직무 정지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논의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를 보시면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는 조합의 회계장부 공개 요건을 완화하였고 집행간부 임면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경영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독립이사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정부위원 등을 포함해서 인사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점을 강화하려는 개선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중앙회 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또 중앙회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독립성 및 정부감독 강화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의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조합지원자금에 대한 통제를 역시 강화하며 조합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회 외부에 독립된 법인으로서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회의 감사기구를 축소하고 중앙회의 자사회 감독권을 폐지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사회 감독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그간의 논의를 정리한 정부 대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조문은 같이 배부해 드린 신규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과 정부 대안의 내용이, 개정안의 내용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설명하실 내용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간 위원장님 비롯하여 많은 위원님께서 많은 고견을 주셨고 저희들이 입법조사관님들과 함께 정부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잘 정리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까지 농협중앙회나 또는 농협조합장들의 의견은 크게 분류하자면 당초 입법안에 담겼던 중앙회장의 직선제에 대해서 간선제, 현행 제도나 이런 걸 운영하자는 의견이 그동안에 제시되었고 또 독립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합감사위원회 내용을 독립 법인 형태가 아닌 내부조직화하자 이런 제안을 그동안에 농협 쪽에서는 입장으로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장의 직선제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수용하겠다 하는 공식적인 발표를 했고 독립 법인화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내용은 동일하게 하되 독립 법인이 아닌 자체 조직화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후자 안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적인 협의와 검토가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아마 오늘은 이렇게 그동안에 논의된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데 과정이고 가능하면 25일에는 그런 내용 다 정리해서 의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 그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여기 친구조문대비표를 우리 위원님들께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다 드렸습니까? 여기 이 내용이 앞으로 변경되고자 하는, 그동안 소위에서 축소심사를 마치고 현재까지 수용된 내용으로 정리된 안이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나 소위 위원님들이 아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이 내용들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도 좀 해 주시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우리 위원님들 이것 관련해서 말씀 주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 우선 너무 고생하셨다라는, 전반기에 농해소위 법안소위에 계셨던 위원님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함께하셨던 분들도 너무 고생하셨다. 친구조문대비표 보고 어제 나름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 너무 고생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농해수차관님께 드리는 말씀……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직선제가 드디어 되나. 그런데 걱정은 실제로 그 직위를 이용한다거나 또는 사실 선거법상 금지된 금전의 지출 등을 통해서 직선제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실은 형사사법기구, 새로 개칭하는 중수청이랄지 또는 경찰이랄지 사전에 철저하게 직위를 이용하거나 금전을 통해서 직선제의 취지가 처음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관계기관과 선관위도 있을 것이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차관님, 한 가지만.

최근 지역에서 지역조합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서 우리가 이번에 중앙회장을 직선제로 하고 그다음은 중앙회장 임기를 3년으로 단축을 해서 지역조합장하고 중앙회장 동시 선거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민원들을 넣었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서 오히려 내년에 있는 지역조합장선거를 1년 정도 늦춰서 하면 굳이 그렇게 나중에 중앙회장 임기를 단축해서 같이 동시 선거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혹시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이나 건의 내용 있었습니까, 아니면 처음 듣는 내용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정책기획관 윤원습 농정국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보다는 조합장의 임기를 한 해 더 늘려서 선거 기간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논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조합장선거는 지금 스케줄상으로 보면 내년에 이미 예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현장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준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문금주 위원 관련해서 최근에 민원이 새로 들어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연명해 가지고 건의를 했다거나?

○농림축산식품부정책기획관 윤원습 공식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 건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정책기획관 윤원습 예.

○소위원장 윤준병 김성범 위원님.

○김성범 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직선제와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농림부 측이나 혹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소위원장 윤준병 차관님께 말씀하시지요.

○김성범 위원 직선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규정을 보니까 일부 절차적 규정을 넣어 놓긴 했는데 아마 세부적으로 실행하려면 하위 법령을 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선관위 관련 조항을 받아 와서 하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본선거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선거 비용 제한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걸 어떻게 감시 감독할 거냐 하는 문제 등도 있어야 되고 아마 이번에는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 총선이나 지방선거 하듯이 선거 비용 보전 문제는 그동안에 어떻게 논의가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직선제로 하되 오히려 돈을 더 쓰는 선거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시각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대목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아마 그동안에 충분히 논의 또는 검토가 됐었을 텐데 그런 상황 혹시 검토된 거나 논의된 사항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저희들 선거 과정에서 그동안의 금권선거로 인한 문제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직선제로 했고요. 이 직선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과도한 선거비용이 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중앙회장의 선거는 위탁선거법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저희들이 동시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최대한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정리된 내용들을 보니까 참 그동안의 여러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설립과 관련해서 반대라고 해야 될지 애로라고 해야 될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대한 비용 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설명 들었거든요. 실제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전산시스템은 현재 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걸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합에 대한 관리는 기존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중앙회가, 현재 중앙에 있는 감사위원회에서 한다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번에 설립하고자 하는 농협

감사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게 팩트라고 한다면 감사위원회의 독립화와 관련해서 그 문제는 제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반대의 명분으로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개혁의 의지가 지금부터 준비가 돼서 개혁의 성과로, 변화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귀담아들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김성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공영제로 진행되고 예전에 금품선거나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입법취지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돼서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조합감사위원회가 감사할 때 조직이나 예산이나 인사나 또 정보시스템 이게 이중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볼멘소리들을 하는데 그건 입법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면서 오히려 규모를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해서 조직 운영이 더 슬림화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잘 정리해서 홍보가 되고 그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소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데 과정을 거쳐서 25일 날 정도에는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일정 관리를 할 계획이니까요 오늘 참여하지 않으신 소위 위원님들께 그동안 논의된 내용들 또 축조심사된 결과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25일에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도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이것은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2)
1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2)
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2)
1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6)

(10시34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4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3항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2권입니다.

먼저 1페이지, 1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에서 보시듯이 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혜기업의 출연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정부의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먼저 윤준병 의원님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혜기업이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노력하고 기금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관세 징수액 100분의 1을 정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도록 하는 한편 기금재원에 기부금을 포함하고 기부금품 접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박덕흠 의원안은 수혜기업의 기금 출연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부족 시 필요 조치 주체를 정부에서 농식품부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박수현 의원안은 조성액 부족 시 관세 징수액의 1000분의 5를 정부가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농어촌협력기금이 조성액 부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노력 의무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한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혜기업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국가 등의 출연 요청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동 기금이 민간기금으로서 그간 3200억 원에 달하는 조성 및 운용 내역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FTA 이행지원기금과의 차별성이라든지 대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윤준병 의원님안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신설에 대해서는 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서만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전체적으로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발의된 법률안의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을 통해서 농어촌 상생 달성을 한다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해수부, 산업부, 기획예산처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조성 약속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내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님.

○신장식 위원 한중 FTA 여야정 합의문을 저희들도 봤어요. 보니까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쪽쪽쪽쪽 1조 원 얘기가 있고 자발적 기금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라고 해서 정부의 필요한 조치가 합의문에 있는데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에 뭘 하겠다는 건지 제가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 여기 합의문에 나왔던, 지금 부족하잖아요? 부족할 때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법안심사를 어떻게 할지 제가 마음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필요한 조치가 뭔가요?

○소위원장 윤준병 차관님, 뭐를 검토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1조 목표였는데 현재 한 3200억 정도만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추가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는 조만간 정부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또 다른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그다음에 이재관 위원님 하십시오.

○김성범 위원 여전히 막연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뭘 논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의사결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담을지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성범 위원 그러면 시점을 위원님들이 아셔야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텐데, 그러면 결국 내년도 예산편성 발표되는 시점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글썄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혜기업한테만 징수의무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FTA로 인해서 발생될 영향의 문제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수혜기업이 어렵다고 하면 저는 정부의 조세부담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자발성이니 이런 문제를 하는 것은, 그리고 현재 대책으로 기간을 연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 이걸로 인한 네거티브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 저는 희망고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예산의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단기적으로 정부예산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지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연장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저는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이 관련해서 저는 농림부의 노력이, 그동안 보면 아무리 기업의 자율적인 기여, 자율적인 기부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농림부가,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최근에 제가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으로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들의 사회적 기여 방안 관련해 가지고 산자부나 노동부나 목소리를 키울 때 저는 농어민위원장으로서 사회적 기여를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얘기했었는데 저는 농림부가 뭔가 얘기를, 목소리를 높여 줄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장관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장관님은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 주세요’ 그러던데,

노동부에서 얘기하고 할 때 농림부에서도 목소리를 키워 주고 저는 그래 주길 바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특히 농림부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최근에 언론 보편은 CPTPP 가입 검토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농어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금주 위원** 기존에 약속된 부분도 아무리 자율이고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가 자유무역에 관한 큰 결정을 할 때—제가 봐서는 저희들도, 저도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노력을, 정말 농림부가 나서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농어민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앞장서 줘야 뭘에도 불구하고 나서야 될 때는 정말 나서지도 않고 뒤로 빠져 있고 어떻게…… 이번에 대통령이 한 말씀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여러분들이 기재부하고 싸우고 계속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신장식 위원님 하실 말씀……

○**신장식 위원** 하나만 더……

초짜니까 좀 봐주십시오. 궁금한 게 많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신장식 위원** 심사자료 3쪽 보면 제가 제일 궁금해했던 내용이 3쪽 맨 위에 있어요. 상생협력에 실질적 효과를 내는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동 기금은 민간기금으로서 운용 주체인 재단의 운용 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런데 운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정부와 국회가 그 집행 내역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담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걸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현재 재단에서 조성, 출연한 기업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그 용도를 어떻게 썼는지를 내부규정에 의해서 공개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정부가 지금 1조를 맞추기 위해서—약속이니까 저는 지켜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한 7000억 원을 넣으면 어디다 쓰는 거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나?

기금사업 집행현황 자료를 찾아보니까 926개 사업에 2085억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926개 사업에 2085억 원이면요 한 사업당 한 2억 원 들어갔다는, 그냥 단순히 0~9 산수를 해 보면.

그러면 2000억 원이 효과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에게, 특히 FTA로 인해서 네거티브(negative)한 효과를 보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제대로 집행됐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수치만 딱 보고도. 그런데 이게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서 정부가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7000억 원이 들어갔어요, 1조 원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제대로 쓰인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정부에서 돈 내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초짜라서 이런 의문이…… 이미 다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설명 드릴까요?

○**신장식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 주신 우려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 체계를 별도로 구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관련 법에 대해서도, 그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집행된 내역들을 보면 기금 조성이라고 해서 그 기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목적사업으로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기업들이 특정 시군의 특정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1 내지 2년 내에 그 기금이 소진되게 되는 그런 구도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차관님, 이것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된 우리 법안은 농식품부가 10년 동안 직무유기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구체적으로 입법발의된 내용이 1년 이상 됐는데 입법한 내용을 지금도 정부에서 대안조차도 못 내놓잖아요. 그러면서 정부안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대기업들 불러다가 이것 출연시키려고 반강제적으로 증인 신문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거 매년 보잖아요. 그걸 단절시킬 노력을 해야지 여전히 손놓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국회의원들이 무슨 앵벌이입니까?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저는 이 부분은 대표적으로 정부가 말로는 FTA 할 때 설득하고, CPTPP도 마찬가지로예요. 이런 형태로 운영하면서 또 ‘제2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만들 테니 농어민들 당초 좀 불이익이 있더라도 용인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형태로 대응하면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 농식품부나 정부가 FTA를 하면서 농어민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잘못하고 있고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봐요. 금년 연말이면 한시법이어서 법이 실효되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여태까지 손놓고 있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국회의원들이 워크숍 하면서 이 문제 제기했어요. 거기에 화답이라도 하시는 듯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주셨어. 그런데도 내부적으로 부처 협의한다는 미명하에 아직 대안조차도 못 내놔.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산으로 넣겠다고 그래요.

법이 금년 말에 실효되면 예산 넣는다 하더라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유 있게 ‘예산에다 넣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체적인 내용도 제대로 검증 안 하고 써 놔요, ‘농식품부, 기금 부족분 충당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항구적인 정부 출연 근거를 법제화하는 경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게 한시법인데 항구적인 정부 출연 근거를 법제화하는 겁니까? 이게 한시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안 하고 법적 성격도 잘 모르면서 용어를

써 놓는단 말이에요. 또 이것 넣으면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 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원론적으로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출연을 유인하기 위한 노력을 했나요?

그리고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잖아요. 1조 원에 대해서 책임지기로 했으면, 금년 연말이면 대통령 말씀따나 책임져야지. 책임지도록 하려면 출연해야 되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넣어야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것 하자고 입법안에다 넣어 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또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 자료 내라고 해도 안 내. 입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입법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도록. 관리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금년 연말이 끝나면 재원도 확보해야 되지만 지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게 금년 연말에 실효되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빨리 입법화해야 되는데 예산 타령하고 있어요, 입법 내용에 대한 뒷받침은 안 내놓고. 예산만 반영해서 7000억 출연하는 내용이 예산 반영되면 끝난 겁니까?

그다음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배임에 해당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 근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부금품법에다 만들면 그 내용은 쉽지 않아요, 그걸 배제하기 위한 내용에다 허용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로 기부금품을 허용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서 입법화된 예가 있어서 여기다도 그 내용을 넣어서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담았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산업부가 어떻게 기획처가 어떻게 하는 내용이 진짜 그동안에 제대로 운용된 내용을 검토하고 법적인 문제, 그런 내용을 극복하기 위해 담긴 뜻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지금 10년 동안 해 온 내용 그대로 답습하니깐. 입법발의된 내용에 대한 대안도 제시 못 하는 현 농식품부의 무능함 이걸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사례라고 저는 봐요, 이것.

25일 날 의결할 수 있도록, 축조심사 다 할 수 있도록 입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만들어 오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때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잠깐만 설명드리면요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정부 내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문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저는 산업부가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 CPTPP는 죽어도 동의 안 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CPTPP 하면 보나마나 유사한 대안으로 ‘농어민들 피해 입은 거 대책 강구해 내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이따구로 하면서 어떻게 CPTPP를 거론할 수 있겠어요, 그런 자세로. 농민들을 한 번 속였으면 됐지. 여기서 위원들이 농민 또 속이라는 얘기입니까?

자, 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번 조성 목표액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개정은 당초 2027년 1월 16일까지인 조성액 목표 규정의 기한을 10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출연금 조성 부진과 FTA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 지속에 따른 지원 필요성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칙은 각각의 안이 각각 다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윤준병 의원님안처럼 만약 통과를 시킨다면 공포한 날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도 기부금품 접수에 관한 사항은 제도 운영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은 정부안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25일 날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도록 요청하면서 25일에 상세하게 축조심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김성범 위원 위원장님 정리에 동의하고요. 다만 정부 내 협의 과정에서 농식품부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면서 위원장님께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정부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의사표시 같은 걸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농식품부가 여기 와서는 혼나지만 정부 내에서 협의하는 데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 어려우시면 문금주 위원님, 당 차원에서라도 하여간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문금주 위원 지난번에 성명까지 냈는데도, 나는 농림부에서 맞장구를 쳐 줄 줄 알았더니 전혀 안 움직여 버리더라고요.

○김성범 위원 한 번 더 세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 김성범 위원님 제안이 있었으니까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지금 제가 깊이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그냥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리면 이것 10년을 연장한다고 하면 그 조성 목표가 매년 1000억 원, 그러면 1조 3000억이 되는 건가요, 나중에 조성이 됐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하게 된다면 매년 1000억이기 때문에 2조가 되는 겁니다, 20년 하면.

○이재관 위원 그러니까 그 총액 규모도 2조로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200억밖에 출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 방안을 고려해서 1조를 맞추는 거고요. 앞으로 10년간 연장한다면 매년 1000억 목표로 10년간 연장하게 됩니다.

○이재관 위원 조성 목표액 자체가 1조가 2조가 된다는 말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렇다면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관련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계속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워서 기재부하고 투쟁해야지요. 그렇게 지금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최근에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농어촌특별세 관련해서 말씀도 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농어촌특별세 얘기 나오기 전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좀 키워 가지고 이런 부분도 농어촌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대체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나름 그런 아이디어도 내고 그랬었는데 지금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리고 당장 내년에 규모를 늘릴 계획이 있으신 건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두 가지 주셨는데요. 지금 우선적으로 현재 농어촌기본소득의 세원 자체는 농특세입니다. 농특세를 지특회계로 넘겨서 지자체가 집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두 번째, 예산 확보하는 것은 정부 내에서 지금 현재보다는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걸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농특세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소위원장 윤준병 문금주 위원님 말씀 주신 농어촌과 관련된 예산, 몇 가지 큰 틀에서 보면 공익직불금과 관련된 기본계획 빨리 제출하면서 거기에 담겨야 될 농어촌의 지원 규모 그다음에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된 예산 규모 또 상생협력기금과 관련된 내용, 기획예산처에서 담아야 될 몇 가지 큰 방향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차체에, 정부 예산이 지금 100조 규모의 증액이 있잖아요. 그중의 일정 부분은 물론 미래대응기금에 넣겠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농어촌과 관련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변화 또 농정대전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금년 예산 하기 전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6)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0)
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0)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9)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6)
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0)
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2)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0)
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0)
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5)
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3)
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3)

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8)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1)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5)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3)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0)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3)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2)
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0)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6)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6)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7)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0)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7)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1)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8)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3)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9)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7)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5)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7)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0)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2)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8)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5)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8)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0)
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1)
5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3)
5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3)
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9)
5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8)
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7)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8)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4)
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2)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0)
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5)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6)
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4)

6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2)
6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6)
6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2)
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4)
6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1)
7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5)
7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6)
7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6)
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7)
7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1)
7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02)
7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86)
7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68)
7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57)
7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71)

(11시02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79항까지 66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종 전문위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1번, 동물보호법 제명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동물의 보호 측면에 관한 규정이고 정부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므로 제명 변경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번, 동반자 등 정의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등을 영구·일시적으로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을 동반자 등으로 분류하여 소유자 등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은 소유자 중심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반자 개념을 도입하려면 개정안과 같이 일부 조문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법 전반에 걸쳐서 각각 개념을 구분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3번, 봉사동물의 날 지정 및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봉사동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봉사동물의 날을 9월 23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동물보호의 날이 10월 4일로 지정돼 있으므로 단일 기념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4번, 동물 선물 외교 관행 지양 및 선물받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입

니다.

대통령선물이 동물일 경우에는 이를 보호·관리하도록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선물하는 외교 관행에 대한 규제도 보호법보다는 기록물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5번, 동물보호교육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동물보호교육의 수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6번,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지자체 및 국민의 책무 명시 사항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방지 등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동물복지기본법과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7번, 동물화장시설 등 설치·조성 시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영 근거 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동물화장시설 등 장묘시설의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는 데 있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8번, 재난 대비 동물보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소위원장 윤준병 잠깐만요.

11쪽까지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먼저 1쪽, 동물보호법 제명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기본법이 현재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4쪽입니다.

동반자 등의 정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관련 법령이 소비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반자의 개념을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선제적인 요인이 선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봉사동물의 날 지정 및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봉사동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동물보호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는 봉사동물의 사회적 공로 등을 홍보하고 있고 현재 동물보호의 날과 개정안에 따른 봉사동물의 날이 시기적으로 인접함으로써 홍보의 효과성, 행·재정적 효율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기념일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수용 곤란입니다.

다만 6개 부처 및 민간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봉사동물의 운영 및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동물 선물 외교 관행 지양 및 선물받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에 관해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동물보호, 복지 증진을 위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국가 간 외교에 관한 사항을 동물보호법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동물보호교육의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지자체와 국민의 책무를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지자체 및 국민의 책무 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동물화장시설 등 설치·조성 시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동물 장묘시설 설치·조성 시 인근 주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2쪽은 부동의고, 수용할 수 없다는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4쪽, 5쪽도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고.

6쪽은 수용이고, 수정의견으로 수용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7쪽은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고 9쪽은 수용이고 10쪽은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고 11쪽은 수정의견으로 수용이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중 13페이지입니다.

8번, 재난 대비 동물보호계획 수립 및 지자체 동물 구조 책임 확대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발생 시 동물 구조·보호를 포함하고 지자체에 보호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 이후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 절차를 마련하고 소유자 등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9번,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에 지방 추천 인사의 참여 명문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동물보호위원회에 위촉하는 것으로 지자체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10번, 소유자 등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강화 및 동물학대 신고 제도 신설에 관한 건입니다.

이 중 신고포상금 규정과 관련하여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

고 개별법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익의 침해가 중대할 경우에 도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 신고포상금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11번, 동물학대 등의 금지행위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건입니다.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있는 동물학대 금지 예외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강한 규범의 바로 옆에 이 경우는 가능하다고 규정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동물학대 금지라는 규범력 자체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12번, 포획한 유실·유기동물의 유기·방사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포획 후에 기존 활동 영역에서 벗어난 장소에 유기하는 행위가 실질적인 폐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동물의 생존 보호를 위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13번, 채액 채취 금지의 예외로서 다른 동물에 대한 혈액 나눔 명시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헌혈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른 동물에 대한 혈액 나눔을 법률에 규정하여 불법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없앴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14번, 동물 과다사육·방임행위(애니멀 호딩)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동물을 과다 집단사육을 통해 포화 및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명시한 것으로서 애니멀 호딩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애니멀 호딩 그 자체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으므로 과태료 1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15번,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의 학대행위 명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물을 차량에 매달아 운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현행법에 따라서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학대행위 발생 시 법령상 동물 구조·보호 조치에 경찰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구조·보호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현행대로 동물보호센터 등을 갖춘 지자체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현장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16번, 소유자 부재 등 방치동물의 구조·보호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소유자의 사망 등 부재로 반려동물이 방치될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반려동물의 구조·보호가 현행 제도로 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여 소유자가 사망, 행

방불명인 경우에만 구조·보호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17번, 영리목적 피학대·유실·유기·사육포기 동물 기증 수령·인수행위 금지 및 벌칙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변칙적인 형태의 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고액의 과양비를 받거나 해당 동물을 재판매하는 영업을 막기 위해서 대상 동물을 모든 반려동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3쪽입니다.

재난 대비 동물보호계획 수립 및 지자체 동물 구조 책임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재난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동물 구조·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지자체의 구조·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해 구조·보호 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동물의 공고·반환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관련 조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에 지방 추천 인사의 참여 명문화는 수용입니다.

24쪽입니다.

소유자 등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강화 및 동물학대 신고 제도 신설입니다.

먼저 소유자 등의 동물 적정 관리 의무강화를 통한 동물보호,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타 분야와 달리 동물학대의 경우 자발적인 제보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의 학대 행위가 적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개정안 수용 시 현행법상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절대 금지되는 학대행위가 일정 요건 충족 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결과적으로 동물의 보호 수준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고양이 등 영역 동물의 경우 타 지역에 방사 시 생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31쪽입니다.

체액 채취 금지의 예외로서 다른 동물에 대한 혈액 나눔을 명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32쪽입니다.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애니멀 호딩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항이므로 별도 조항 신설 대신 현행 조항을 분리하고 동물에게 상해·질병·사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육·관리·보호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수정의견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먼저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이미 처벌한 사례가 있으므로 별도로 추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뒤편의 경찰청,

소방청의 의견을 고려하여 아동·노인학대 등 유사 분야와 동일하게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 시에 한해 경찰에 현장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소유자 부재 등 방치동물의 구조·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먼저 지자체가 신고를 받아 인지한 경우에도 해당 동물의 실물을 발견하여야만 구조·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유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입원, 구금의 경우 사육포기 동물인수제를 활용하고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방치되어 적절하게 사육·관리·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서만 구조·보호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한 수정의견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44쪽입니다.

영리 목적의 피학대·유실·유기·사육포기 동물 기증 수령·인수행위 금지와 벌칙 신설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원소유자로부터 고액의 과양비를 수취하거나 과양동물을 재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 행위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변칙 영업 근절을 위해 모든 반려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기증받아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하면 20쪽, 이견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20쪽 동의.

24쪽, 신중한 검토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개정안에 대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수용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다만 두 번째, 신고포상금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9조는 동의고 90조의2는 불수용 그런 뜻이다 이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27쪽 불수용?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소위원장 윤준병 29쪽 수용, 수정의견에 동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31쪽 동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소위원장 윤준병 32쪽도 동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수정의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35쪽도 수정의견에 동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소위원장 윤준병 40쪽도 수정의견에 동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소위원장 윤준병 44쪽도 수정의견에 동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문금주 위원입니다.

이 동물보호법에 관한 의원님들 관심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개정안이 엄청나게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우선 제가 반대한다는 의견이 아니라 그만큼 동물복지에 대한 요즘의 국민적 관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개정안이 많이 발의가 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29쪽에 벌금 있잖아요, 벌금. 또 뒤의 44페이지에 있는 벌금, 요즘 대통령께서도 형벌 합리화 차원에서 각 법안에 있는 벌금들, 우리나라 전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들 상황이나 이러면서 가급적이면 벌금을 과태료, 행정벌로 바꾸는 노력들을 좀 하라는 얘기도 있고 하니 여기에 나와 있는 동물 보호도 중요한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과연 벌금으로 징벌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 처분을 해서…… 과태료 수준을 좀 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벌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뜻 이해했습니다.

○문금주 위원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보면 경찰…… 요즘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 출범 이렇게 해 가지고 경찰 인력이고 또 소방 인력이고 지금 인력들이 부족하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물론 동물 보호도 중요하고 피난도 중요하긴 한데 과연 이런 부분까지, 경찰이 어느 선까지 나서야 되는지, 소방 인력이 나서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제가 봐서는 경계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우리가 지금 쉽게, 편하다고 법안 개정안 내서 경찰의 도움받고 소방의 도움을 받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하면 사람을 구해야 될지 동물…… 물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게 우선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잘못하면 이 경계가 애매모호해지고 경찰 인력이랄지 소방 인력들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상당히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걸로 인해서 과도한 출동이랄지, 요즘 소방청에, 119에 장난전화하는 것도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법안 발의해 가지고 개정해서 그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농림부가 심각하게 깊이……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고민을 해서 경계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는 있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이현종 46페이지입니다.

18-1번, 동물학대범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 근거 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I 번 II 번, 크게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동물의 사육을 금지하는 것으로 동물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반적인 절차는 박홍근 의원안을 따르되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 방식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고 명령 위반 시에는 보호관찰관이 지자체장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임시사육금지명령은 피학대동물의 긴급격리조치 후에 공소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의 결정을 통해 사육권을 제한하는 구조이므로 불기소나 무죄판결이 날 경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보호조치를 허용하는 18-2번에 있는 박성훈 의원안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18-2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반환 예외 사유 신설 및 소유권 포기 권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동물 소유자의 동물학대행위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학대 위험에 빠진 동물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소유자에게 소유권 포기 권고사항은 그 실효성이 문제되므로 삭제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19번, 동물 도살 과정에서의 고통 최소화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동물의 도살 과정에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은 도살 외 불가피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고통 최소화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는 반면에 개정안은 적용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가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20번, 동물의 미용 목적 외과적 수술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을 문헌대로 해석하면 의료·미용 목적 외의 수술인 유기견 중성화 수술의 경우에는 수의학적 방법이 아니어도 허용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21번, 동물등록 방식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생체정보(유전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건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무선식별장치 중심의 등록 방식에 더해서 생체정보 등록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개체 식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생체정보 방식에 대한 신뢰도 검증, 소요 비용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등록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의 성격상 법적 근거 없이도 예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22번, 등록대상동물의 정기적 갱신등록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소유자에게 3년마다 등록 갱신 의무를 부과하여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갱신등록 내용이 현행 변경신고 의무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23번, 등록대상동물 등에 대한 중성화 수술 시행 및 비용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 및 지자체가 기증·분양하는 동물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체 등록대상동물로 확대하는 것은 재정소요에 대한 검토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24번, 봉사동물 적정 보호 관리 의무 부과 및 봉사동물 보호·관리 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은퇴한 봉사동물의 사육·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익에 기여한 동물에 대한 사후 책임을 담당한다는 점에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양한 주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설치·운영의 주체를 국가 및 지자체로 수정하였습니다.

24번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46쪽입니다.

동물학대범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 근거 마련은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동물학대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대상범죄는 기본권 과잉 제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죽음, 상해 등 중한 학대행위에 한해 우선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대상동물은 중한 학대행위를 한 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에 한해서 도입한 점을 고려할 때 모든 동물에 대해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사육금지명령 부과 이전 피학대동물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현행법상 구조·보호 조치를 보완하여 소유자가 기소된 경우 유죄판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대안을 수용합니다.

76쪽입니다.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반환 예외 사유 신설 및 소유권 포기 등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재학대 발생 우려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한 동물학대로 기소된 경우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반환에 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81쪽입니다.

동물 도살과정에서의 고통 최소화는 수용곤란입니다. 동물의 도살과정 중에서 불필요한 고통뿐만 아니라 공포·스트레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바람직하다

고 봅니다.

82쪽입니다.

동물의 미용 목적 외과적 수술 금지는 수용곤란입니다. 미용 목적의 외과적 수술은 현행법에서도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동물등록 방식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생체정보 추가 등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유기·유실 방지라는 동물등록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유전자 또는 생체등록 방식을 통한 개체식별의 안정성, 신뢰도 등 실효성 검증을 먼저 선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동물등록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정기적 갱신 등록에 대해서는 기반영되어 있으므로 수용곤란입니다. 동물등록 변경 사항 발생 시 30일 내에 변경신고 의무화가 되어 있고 또한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갱신 의무 도입은 실익이 낮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89쪽입니다.

등록대상동물 등에 대한 중성화 수술 시행 및 비용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관계부처 의견을 고려하고 중성화 수술 지원 필요성·타당성이 높은 지자체가 보호 중인 동물에 한해 중성화 수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봉사동물 적정 보호·관리 의무 부과와 봉사동물 보호·관리 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봉사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국가기관과 민간 등을 포괄하는 ‘소유자 등’을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 주체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봉사동물의 보호·관리와 관리 권한의 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해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주체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46쪽은 수정의견에 동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수정의견 동의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76쪽 수정의견에 동의, 81쪽 개정안에 부동의, 82쪽도 부동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83쪽은 수정의견에 동의.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게,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생체정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선행 연구가 필요하고 검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파리나 이런 데는 이미 생체정보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내

부적으로 입법을 해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연구도 하고 구체적으로 생체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외국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 내부적으로 활용을 이제서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고, 입법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 현재 저희들이 비문 정보로 개체식별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체식별 정도가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내용은 식별하기 위해서 칩 심고 이런 게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나 이런 경우에는 코가 우리 지문 인식하고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그 내용과 관련되면 오히려 데이터 정보 수집하거나 이런 게 용이하기 때문에 이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지금 동물 업계나 또는 애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방안이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수반해서 이걸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걸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선택적인 내용을 넣는다고 해서 이게 행정처리를 하는 데 부담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서, 다음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거 또 고통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정의견은 알겠고요. 동의하겠다는 의견은 알겠는데, 생체와 관련된 내용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86쪽 부동의, 89쪽 동의, 91쪽 동의.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종** 제3장제2절 맹견의 관리 부분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25번, 맹견의 견종 확대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특정 견종을 맹견으로 확대 지정하고 있습니다. 맹견 지정은 사육허가, 출입제한, 책임보험 가입 등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합리적인 지정기준 마련 후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26번, 맹견 출입 금지 장소 확대 및 관리체계 강화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맹견의 출입 금지 장소를 확대하거나 접근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출입 금지 및 제한은 소유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27-1번, 맹견 관리·개물림 사고 관련 사항 조사 및 공표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맹견 관리 및 개물림 사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으로 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27-2번, 개물림 사고 발생 현황 관리 등을 위한 법 체계 정비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시 이를 등록사항에 기재하고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28번, 맹견사육허가의 필수적 철회사유 신설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중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경우 맹견사육허가를 의무적으로 철회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안전 측면에서는 적절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허가 철회 시 맹견이 인도적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허가 철회보다는 맹견의 공격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29번, 맹견사육허가 및 철회권자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안은 맹견사육허가 및 철회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맹견사육허가 여부 판단이 동물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등록 정보는 기초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사육허가 권한도 동일한 주체로 일치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30번, 맹견 5종에 대한 기질평가 비용 지원의 근거 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맹견 5종에 대한 기질평가 비용을 소유자 부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누가 부담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도지사로 수정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31번, 맹견사육허가 요건 중 중성화 수술·기질평가 의무의 예외 사유 신설 및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경우의 제재 근거 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중성화 수술 또는 기질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신설하였으나 사육허가 시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여 사육허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저해하지 않았으므로 긍정적인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32번, 맹견사육허가 요건에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추가, 맹견사육허가 갱신제의 도입에 관한 건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사육허가 전에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기질평가에 따라 추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안은 사육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면서 갱신 시마다 책임보험 가입 등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그 시점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허가 이후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교육 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33번, 맹견의 관리 강화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 등에게 맹견사육허가 여부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고 인식표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인식표 미부착 행위와 고의적인 인식표 대여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34번,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제도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동물관리지도원을 위촉하여 등록대상동물·맹견에 대한 관리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명예동물보호관도 같은 업무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4번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맹견의 견종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곤란입니다. 맹견 지정 시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맹견 종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정신적·신체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밀접한 시설이므로 추가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반경 1km 내에 접근 금지 및 체육시설, 대규모점포 출입 금지는 유사 목적의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해당 시설만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출입금지 위반 시에 따른 제재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할 경우 즉각적인 처분이 어렵고 지나치게 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08쪽입니다.

맹견 관리·개물림 사고 관련 사항 조사 및 공표입니다.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국민의 안전 보장과 알권리를 위해 맹견의 관리 및 개물림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110쪽입니다.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안전관리 강화 및 개물림 사고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맹견사육허가의 필수적 철회사유 신설에 대해서는 수용곤란입니다. 맹견 소유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허가가 철회되어 인도적 처리 등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공격 경위나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철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맹견사육허가 및 철회권자를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117쪽입니다.

맹견 5종에 대한 기질평가 비용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맹견 5종 소유자의 경우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기질평가에 응시하고 그 비용을 납부해야 하므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 완화 및 사육허가 신청 독려를 위해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118쪽입니다.

맹견사육허가 요건 중 중성화 수술·기질평가 의무의 예외 사유 신설 및 거짓이나 부정 방법으로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경우 제재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121쪽입니다.

맹견사육허가 요건에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맹견사육허가 갱신제의 도입은 수용합니다.

126쪽입니다.

맹견의 관리 강화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맹견 외출 시 소유자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표시한 인식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행위에 비해 인식표를 미부착한 행위는 단순 과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수준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29쪽입니다.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제도 신설에 대해서는 수용 어렵습니다.

현재 동물명예보호관 제도를 통해 민간으로 하여금 등록 대상 동물과 맹견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도의 동물관리지도원 신설에 대해서는 실익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뒤, 김성범 위원님.

○김성범 위원 118페이지 31번 항목에서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한 게 있네요. 행정처분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형사처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거는 법무부 의견을 수용을 안 하는 건가요? 법무부 의견은 119페이지에 있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성범 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 벌칙에 개정안 밑의 부분, 맹견사육허가를 받고…… 그러니까 위쪽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벌칙을 주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벌칙하는 것은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조문이 없어서 지금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사육허가를 받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방법 아닌가요? 그런데 벌칙 조항이 바로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어떤 조건이길래 이게 바로 벌칙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세부적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맹견사육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기질평가를 하고 사육시설에 대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육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있는데 1년 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국장직무대리 이연숙 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정책국장직

무대리 이연숙이라고 합니다.

맹견사육허가제 관련해서는 국민 안전이라든지 개 물림 이런 사고 때문에 저희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건이고요. 관련해서 현장에서 현재의 제도가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있으시고 저희가 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를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개정안을 요청을 드린 거고.

관련해서는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안전 측면에 그래도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물보호단체라든지 관련 전문가들이랑 논의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책 조항으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꼭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도가 포함돼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신장식 위원님 말씀……

○신장식 위원 허가 조건 위반일 경우 행정질서 위반의 성격으로 허가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하고라고 얘기를 했을 때 허가 조건 위반인 경우에 현재 행정처분은 뭘 하고 있나요? 거처서 벌칙으로 가는지, 곧바로 벌칙으로 가는지, 행정처분이 적절한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말씀을 해 줘야 벌칙으로 바로 가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게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냥 추상적 원칙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허가 조건 위반일 경우에 행정처분 뭘 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국장직무대리 이연숙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그런데 지금 사육장소에서 이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말해서 이 친구들을 사육……

○신장식 위원 잠시만요. 그런 얘기 필요가 없어요. 허가 조건을 위반했어, 그러면 행정청에서 행정처분하는 게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무슨 행정처분이 있을 것……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국장직무대리 이연숙 허가를……

○신장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 주셔야 벌칙으로 바로 가는 게 맞는지를 판단을 하지요. 허가 조건 위반 시에 행정처분 뭐 하고 있는지.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국장직무대리 이연숙 저희가 사육허가를 해 주는데요 현재는 조건부 허가가 없고요.

○신장식 위원 아니, 그러면 한번 사육허가를 해 주고 나서…… 허가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붙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국장직무대리 이연숙 예,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런데 그 조건을 위반했을 때 아무런 행정처분이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이상하잖아, 그러면. 행정처분을 먼저 하고 그 행정처분이 실효성이 있는지 평가가 되고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규제 실효성이 없으면 처벌로 가고 이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원칙적으로 처벌을 해서 금지 효과를, 위화 효과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행정처분은 지금 없지만 바로 처벌로 간다 이렇게 가면 수용하는 쪽에서 이게 수용이 쉽겠느냐라는 걱정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저도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수용자, 이것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맹견 사육자들.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국장직무대리 이연숙**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농식품부에서 규정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행정상으로 허가를 했어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허가 조건을 위반해, 여러 가지 해서. 그러면 행정적으로 허가취소를 하는 게 일차적이지요, 처분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국장직무대리 이연숙**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차적으로 형사적인 제재를, 소위 행정형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부적으로 행정취소나 이런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이 바로 형사 행정형벌로 간다 그러면 허가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법 체계상 제재를 하는 내용이 안 맞거든요. 그 내용을 신장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니까 그 내용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즉답이 어려우면 다음에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국장직무대리 이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준병** 김성범 위원님.

○**김성범 위원** 이 조항 관련해서도 개정안의 18조 6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인용 조문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게 현행법 18조 6항은 공동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라서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규정을 하더라도 인용 조문이랑 지금 제가 현행법을 보고 있는데 허가 조건을 불인다는 조문도 없고요. 물론 허가의 성격상 필요 시에 조건을 불일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그 부분들 한 번 더 종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신장식 위원** 저도 조문을 다 보지 못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허가를 했으면 당연히 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이런저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실 때 그게 실효적인지 아닌지, 만약 그런 허가취소라든지 또는 어떤 행정벌을 해 놓은 게 있었으면 그게 실효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주셔야 제가 형사 제재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설명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세부적으로는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든다면 중성화 수술을 하기로 하고 사육허가를 받았는데 중성화 수술을 안 할 경우에는 사육허가가 철회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들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사육허가를 했는데 일반적인 행정법 체계상 허가를 했으면 허가할 때는 다양한 조건이 붙을 수 있지요. 그러나 허가를 불법으로 했거나 여러 가지 요건이 되면 허가취소 요건 있지요. 거기에 따라 취소가 수반되는 거지요.

그래서 허가 내용이 공익적으로나 조건적으로나 이게 이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행정법 체계의 기본 원리니까 분명히 여기도 허가적인 내용이나 그런 내용이 수반될 건데 지금 우려하고 있는 내용은 허가적인 내용 가지고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부가적으로 행정형벌이 수반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지키도록 더 강압적인 또 강제적인 또는 더 엄한 제재 수단이 수반되는 것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입법안이 제시됐으니까 법무부에서는 꼭 중간에 있는 제도를 발의하면 행정 형벌을 수반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잖아요. 그 의견 취지를 제대로 살렸는지, 입법화된 내용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달라는 말씀이시니까 그 내용을 제대로 점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종** 제3장 제4절 동물의 구조 등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35-1번, 유기동물의 범위 확대 및 유기동물의 범위 명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동물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행위까지 유기하는 행위로 포함한 것으로 위탁을 악용한 사실상의 유기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35-2번, 유실동물·유기동물의 구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유기동물과 유실동물을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유기·유실동물 관련 규정은 주로 구조·보호 대상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운영상 구별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35-3번, 동물 유기행위 처벌 강화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맹견 외 동물을 유기할 경우 현행 3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500만 원 이하 벌금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36번, 동물구조 업무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건입니다.

동물구조는 긴급성과 현장 판단이 중요한 영역이므로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면제하여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37번,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설치 의무화에 관한 건입니다.

동물보호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경우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데 소규모 지자체에 과도한 예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38번,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관련 지자체 자치입법권 확대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 업무의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지

자체의 입법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39번, 기설치된 민간동물보호시설 대상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특례 부여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타용도 일시사용을 통해 위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단기간 내 적법한 이전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40번,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을 구조·보호하는 동물보호단체 신고 의무화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운영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동물보호단체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구조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41번, 동물검사 의뢰권자 확대 및 동물검사 기관 지정 근거 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도 직접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현행법의 동물검사 규정을 보완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관할 검사기관의 지정권자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42번, 동물보호센터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보호기간 하한 설정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가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상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30일이 지나면 동물을 인도적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43번,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동물 기증·분양 제한에 관한 건입니다.

동물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동물학대 범죄자에게 기한의 제한 없이 동물을 분양받는 행위를 영구 금지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44번,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의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근거 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도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인도적인 처리 주체를 확대할 경우 무분별한 인도적 처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45번, 동물 사체의 수의학 교육·연구 활용 근거 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동물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교육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체 수급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그 취지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도적인 안락사, 동물 사체 제공 등은 윤리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체 제공 대상 기관,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하위 법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5번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32쪽입니다.

유기동물의 범위 확대 및 유기동물의 범위 명확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장 등에 동물을 사실상 유기하는 행위의 처벌을 위한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유기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유자 등의 금지행위에서 규정토록 하는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의 구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의 정의는 지자체의 구조·보호 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장에서 양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의 정의를 구분하는 것은 실익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동물 유기행위의 처벌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만희·박덕흠 의원안을 수용합니다.

동물 유기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련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벌금 상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140쪽입니다.

동물구조 업무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입니다.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적극적인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등을 위해 면책규정 신설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와 같이 면책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43쪽입니다.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설치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망 확충을 위한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조·보호동물의 현황을 고려할 때 모든 시군구까지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145쪽입니다.

기설치된 민간동물보호시설 대상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특례 부여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농지법 관련 위반 행위 해소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농지법상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일부 수정한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147쪽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을 구조·보호하는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현행법상 동물보호민간단체의 경우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설립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단체로 한정하고 있고 해당 동물보호단체를 포함하여 민간이 보호 중인 동물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 동물을 보호하려는 경우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익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51쪽입니다.

동물검사 의뢰권자 확대 및 동물검사 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동물학대 범죄 시 신속·정확한 대응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동물학대 여부 판단 검사를 위한 절차·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다만 지자체 관할 검사기관의 지정권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 자구를 수정한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53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보호기간 하한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개정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보호기간 30일이 지나면 기증·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인도적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상 지자체가 취득한 유실·유기동물, 피학대동물, 사육포기동물의 보호기간의 하한을 설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54쪽입니다.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동물 기증·분양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영구히 기증·분양을 제한할 경우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상 반려동물영업자에 대한 허가·등록·결격 사유와 유사하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의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인도적 처리 권한을 민간동물보호시설까지 확대하는 경우 무분별한 인도적 처리가 증가할 위험이 있으므로 동물복지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64쪽입니다.

동물 사체의 수의학적 교육·연구 활용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교육·연구 목적의 사체 공급을 위한 의도적 안락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체 제공 대상, 방식을 구체화한 수정의견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관한 파트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46번,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재심사 기간 등을 행정기본법에 따라 정비하는 건입니다.

개정안이 정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재심사 기간 등은 이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부령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검토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47번, 동물복지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시 회수 의무 및 제재 근거 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축산물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영업자에게 제품 회수 의무를 부과하였지만 축산물의 특성상 적발 시점에 이미 소비된 경우가 많아서 회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48번,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의 결격사유 확대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를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거나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추가하였지만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과잉금지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 등이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이나 광고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이를 영업자의 준수사항 조항에 오인하게 하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유사 사례를 고려해서 과태료는 5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49번, 동물생산업·판매업자의 위탁관리업 등록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동물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경우 위탁관리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50번, 동물생산업·판매업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도입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동물업에 대하여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갱신 대상이 과다할 경우 지자체에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시설 개선에 따른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부칙에서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51번, 동물생산업자의 자격요건 신설 및 명의대여 금지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 생산자 자격검증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허가 시 인적·물적 요소에 대한 심사가 있으므로 별도 생산자 자격검증제도를 두는 것이 필요한 조치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52번, 동물생산업의 교배·출산 금지 월령 상한 설정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66개월 이상 고령 동물에 대해 일률적인 출산 금지 기준을 마련하여 동물복지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동물의 품종,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53번, 동물판매업자의 동물 전시기준 규정 등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판매를 목적으로 동물을 전시할 경우 위생, 휴식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현행법과 시행규칙에 위생적 사육 등에 관한 규정이 이미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54번, 동물전시업자 준수사항 신설에 관한 건입니다.

현행 법령에도 개정안처럼 동물전시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영업장 이탈 방지 수단 마련, 정기적인 검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55번, 동물생산업자·동물판매업자의 허가증 게시 의무 규정에 관한 건입니다.

현행 법령도 개정안처럼 영업장 내부에 영업허가증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56번, 동물생산업자·판매업자의 기부금품 모집 행위 금지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처럼 기부금품 모집 자체를 일괄적으로 금지할 경우 과도한 기본권 제한 요구와 실제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면서도 적법한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할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57번 노화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식 규정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처리의 의미가 보호와 관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인도적 처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58번 반려동물 이력관리 항목에 유실·폐기 포함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동물의 유실과 폐기도 기록·관리·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영업장 내 불법은폐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59번 동물 판매·전달 과정에서의 대면 확인 규정 신설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구매자가 사전에 동물을 직접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정보 비대칭과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과태료 상향에 대해서는 다른 의무위반행위를 고려할 때 과태료 300만 원이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60번 투기 목적의 동물 거래 및 동물 경매·알선 금지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경매 방식 자체를 금지하여 반려동물의 대량생산·대량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투기적 거래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매 방식 자체가 대량생산으로 연결된다 단정할 수는 없고 경매 방식을 규제하더라도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한 대량 유통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투기적 목적 거래라는 것은 투기라는 그 내용의 불명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61번 출입·검사 시 민간단체 참여근거 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단속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박홍근 의원안은 동물보호전문가들, 이수진 의원안은 동물보호 민간단체를 각각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현행법에 명예동물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1번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보고 다 해 버리지요.

○전문위원 **이현종** 제8장 벌칙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62번 동물 도살과정에서의 혐오감·공포·스트레스 유발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신설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행위는 이미 현행법 제10조 1항에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개정안보다 더욱 중한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63번 동물학대 영상물 게시·판매·게재 등 처벌 상향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동물학대행위 등을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을 판매·전시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벌금 수준을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동물학대 영상은 동물학대를 조장·확산할 수 있으므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64번 도박 목적 동물 이용행위, 영리 목적 동물 대여행위, 상·경품 제공 목적 동물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상향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동물 오락, 유흥 및 영리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도박 목적 이용 시에만 개정안대로 처벌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65-1번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일괄 상향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과태료 상한을 전반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이 위반행위의 성격과 제재 수준에 비추어 적정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65-2번 등록대상동물 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준 상향입니다.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하여 동물등록제도의 등록률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신고 의무 등 위반 사례에 대한 과태료 수준과 비교할 때 다소 과도한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38페이지, 66번 부칙입니다.

먼저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다만 일부 조항은 기존 맹견 소유주와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해서 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맹견사육허가 갱신, 동물의 반환 등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기존 동물생산업자의 행정·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갱신 허가를 받도록 경과조치 규정도 두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67쪽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재심사 기간 등을 행정기본법에 따라 정비하겠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 보장을 위한 제·개정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재심사의 경우 심사 결정 이후 심사서류 보완,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재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재심사 결과 통보기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69쪽입니다.

동물복지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시 회수 의무 및 제재 근거 마련입니다.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축산물의 특징상 적발 시점에는 이미 판매·소비가 완료되어 회수가 곤란하거나 회수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수 의무 신설의 경우 도입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허위·부정 표시 시 과태료 상향을 통해서도 축산물판매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72쪽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의 결격사유 확대 및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 사용 금지 근거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입니다.

먼저 박홍근·이수진·한정에 의원이 발의한 동물생산판매업자라는 이유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겸업 중인 자를 대상으로 변칙영업 시 영업 정지, 취소, 폐쇄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사 명칭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보호시설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영업자의 준수사항에서 규정하도록 체계를 수정, 경각심 제고를 위해 위반 시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임호선 의원안을 수용합니다.

181쪽입니다.

동물생산업·판매업자의 위탁관리업 등록 금지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동물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측면과 현행법상 영업자 점검·관리가 가능한 측면을 함께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82쪽입니다.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 허가 유효기간과 갱신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동물생산업·판매업의 갱신 대상 영업장 과도로 인한 지자체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동물복지 수준이 열악한 동물생산업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업자의 경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허가 유효기간과 준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86쪽입니다.

동물생산업자의 자격 신설 및 명의대여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동물생산업은 허가영업으로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 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과도한 규제와 행정비용 발생 등을 고려한 자격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89쪽입니다.

동물생산업의 교배·출산 금지 월령 상한 설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동물생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규제사항으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물생산업장 내에 교배·출산 상한 월령이 지난 동물의 보호·관리 방법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습니다.

192쪽입니다.

동물판매업자의 동물 전시기준 규정 사항에 대해서는 기규정이 있으므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196쪽입니다.

동물전시업자 준수사항 신설 부분에 대해서도 기반영되어 있으므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도 영업자가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관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198쪽입니다.

동물생산업자·동물판매업자의 허가증 게시 의무 규정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현행 규정에서도 영업장 내 허가증 게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의 제재가 가능한 현 규정에서도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202쪽입니다.

동물생산업자·동물판매업자의 기부금품 모집행위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동물생산·판매업자가 동물 보호를 위해 선의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해적 규정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규제 필요성과 비례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5쪽입니다.

노화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의 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

용합니다.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측면에서 관련 사항을 법률상 근거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반려동물 이력관리 항목에 유실·폐기를 포함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윤준병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동물의 이력관리 항목에 번식·반입·반출 외에 유실 및 폐기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체계적 이력 관리를 도모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윤준병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208쪽입니다.

동물 판매·전달 과정에서의 대면 확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동물판매업자가 동물 판매 시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부적절한 분양 유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212쪽입니다.

투기 목적의 동물 거래 및 동물 경매·알선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경매·알선·중개 방식의 금지를 통해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개정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경매장의 전면 금지 시 유통구조의 혼란 및 음성거래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서 대량생산 유통구조를 개선할 대안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투기 목적의 거래는 투기 목적 거래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판매 월령 상향 시 생산비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필요를 고려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16쪽입니다.

출입·검사 시 민간단체 참여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기반영되어 있으므로 수용이 어렵습니다.

현행법에도 명예동물보호관 제도를 통해 동물보호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참여 근거를 마련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21쪽입니다.

동물 도살과정에서의 혐오감·공포·스트레스 유발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신설은 기반영되어 있으므로 수용이 어렵습니다.

224쪽입니다.

동물학대 영상물 게시·판매·게재 등 처벌을 상향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을 수용합니다.

동물학대 사진·영상 유포 등은 생명 존중 의식을 상당히 훼손하는 것으로 사회적 영향력과 확산력을 고려할 때 처벌 수준을 현행 300만 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할 필요가 있고, 타인이 게재한 영상을 인터넷에 공유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

의 경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이므로 이를 별도로 추가할 실익은 낮다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228쪽입니다.

도박 목적 동물 이용행위, 영리 목적 동물 대여행위, 상·경품 제공 목적 동물 이용행위 처벌 상향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을 수용합니다.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것이므로 위반행위의 경중, 다른 처벌 규정과의 균형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대해서 상향 필요성을 검토한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231쪽입니다.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일괄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유사 질서위반행위 간 형평성과 형평성 상향 시 현장에서의 부과·집행 효율성 저하 등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35쪽입니다.

등록대상동물 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준 상향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과도할 우려가 있고 등록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처벌 수준 상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38쪽입니다.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님.

○신장식 위원 제가 두 가지 정도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188쪽 동물생산업자의 자격요건 신설 및 명의대여 금지 관련해서요 영업허가 이외에 인적 자격검증제도를 같이 도입하자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여기 보면 ‘다만 동물생산업은 이미 허가영업으로 시설·인력 기준 심사 및 준수사항 강화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격검증제도 도입의 추가 효과가 불명확하다는 입장임’. 그러니까 그냥 영업허가만 받고 장사할 수 있는 데 무척 많지요. 그런데 그 이외에 수의사도 그렇고 부동산중개인도 그렇고 뭐 등등등 인적 자격검증제도를 갖추고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러니까 그냥 영업허가만으로 효과가 다 있다는 말은, 근거가 저는 설득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동물생산업을 하거나 할 때 실제로 필요 인력에 수의사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일하는 사람 한두 명 이런 정도 인력 기준만 있는 건데 동물생산업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교배를 해서 낳는 과정이 쭉 지속되는데 수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자격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가요? 이 동물보호법의 취지상 그런 게 아니가요? 현장에서 물론 어떤 정도의 어려

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히 영업허가를 받으면 다 된다는 말로는 저는 반대 의견의 논리가 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와 연관돼 있을 수 있는데요 189쪽 보시면 교배의 월령 상한을 66개월로 설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가 극심하다. 66개월로 상한 하면 생산업자들의 반대가 클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다음에 상한 월령이 지난 동물의 보호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걸 추가적인 검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미 상한 연령이, 66개월 이상의 상한 연령 이상 동물들이 계속 교배의 대상으로 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져서 상한 연령을 넘어서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러면 이미 상한 연령이 넘어서 더 이상 생산업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물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생산업자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취지하고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생산업자의 경우에도 지금 매년 1회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시켜 났고요.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사항은 있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더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사전 검토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장식 위원** 그러면 몇 개월로 하는 것이 적절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개월 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는데요. 여기 현재 법에서 발의한 66개월 경우만 하더라도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84개월에서 108개월 정도까지 제한한 예외적인 규정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신장식 위원** 이거 검토안을 좀 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요.

또 김성범 위원님.

○**김성범 위원** 분량으로만 보면 전문개정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전문위원실하고 정부에서 검토하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신규로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에 따라서 별칙 조항도 같이 수반되고 있는데 개별 항목으로만 봐서는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종합이 됐으니까 특히 별칙·과태료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정리를 하셔서 기존의 다른 유사한 행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적정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한 번 더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간중간 보는데 이게 적절한 수준일까 하는 의문이 되는 대목이 조금 있는데 건건이 말씀드리기 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이걸 통해서 관련 당사자들의 행위 변화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의 실효성 있는 조치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별칙이 맞는 건지 벌금이 맞는 건지 과징금을 하는 게…… 경제적인 유인으로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은 경제적인 패널티를 통해서 그 행위를 못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최근의 추세잖아요. 그다음에 과태료도 적정한 수준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놓고 한번 봐 주시고 그 부분을 다음 할 때 검토를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마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재관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어요?

오늘 일단 축조심사는 끝났고요 이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아까 행정처분과 관련된 적정성 여부 김성범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 내용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신장식 위원님 말씀 주셨던 행정 목적 달성하는 과정하고 추가적으로 법무부에서 의견 냈던 행정형벌이 수반돼야 될 필요가 있냐 여부에 대한 의견에 대한 입장 그리고 생산자 자격검증제도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월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입장 이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비문 생체인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검토 이 내용을 포함해서 25일 날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고 그 내용 종합 검토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준비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국장직무대리 이연숙** 아까 맹견사육허가제 관련해 가지고 보충적으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국장직무대리 이연숙** 저희가 맹견사육허가제 관련해 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데 그게 개체수가 무리하게 번식하지 않도록, 증가하지 않도록 좀 제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질평가를 받게 됩니다. 기질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 친구가 위험하지 않은지를 확인해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현행은 그렇고요.

그런데 거기에 예외되는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불만이 많았었고. 예를 들어서 중성화 수술은 다음 세대를 보지 못하는 건데 고령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런 유인들로 인해서 중성화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면제를 해 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으셨고요. 기질평가 관련해서는 뜰 내에서만, 밖에 산책 나갈, 데리고 나갈 이 유가 전혀 없는 애들에 대해서는 거기도 면제해 달라 그런 요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외 사항으로 넣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지켜 주면 고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허가해 준다는 그런 단서 조항을 18조 6항에 넣는 거고요.

그런데 벌칙에 그거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형사적으로 벌금을 하는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법무부에서는 가볍고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조치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단 중대한 경우에는 그쪽 형사처분을 받는 것…… 그러니까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조치로 가능하지만 중대한 위반으로 저희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칙 조항을 넣은 거고요. 허가 철회와 벌칙 조항을 지금 같이 병과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시 또 말씀……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요. 오늘 설명하신 내용 포함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무려 근 세 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김성범 문금주 신장식 윤준병 이재관

○출장 위원(1인)

이개호

○출석 위원(3인)

강승규 김용태 임미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이현종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 전한영

농업정책관 윤원습

동물복지정책국장직무대리 이연숙